

의안번호	제 383 호
의 결 연 월 일	2012년 9월 일 (제 314 회)

##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 계획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교 육 감
제출연월일	2012년 8월 31일

#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 계획안

의안 번호	제 383 호
----------	---------

제출연월일 : 2012년 8월31일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1. 제안이유

- 가칭)충청북도제주교육수련원 설립예정 위치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목적의 변경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 재산의 취득(변경 취득)

(단위 : m<sup>2</sup>, 천원)

기관명	구분	사업명	수량	금액
충청북도교육청	토지	가칭)충청북도제주교육수련원 설립부지 취득	7,934	2,640,000

## 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 계획안 : 별첨

## 4. 관계법령 : 별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

붙임1)

##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계획안

### 1.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단위 : m<sup>2</sup>, 천원)

구 분		당초계획			변경계획			합 계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취득합계	15	107,798.08	135,517,421		582		15	108,380.08	135,517,421		
	계	토지	5	48,630.00	5,701,141		582		5	49,212.00	5,701,141	
		건물	10	59,168.08	129,816,280				10	59,168.08	129,816,280	
		기타										
	1. 매입	토지	5	48,630.00	5,701,141		582		5	49,212.00	5,701,141	
		건물										
		기타										
		2. 교환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	토지									
			건물	10	59,168.08	129,816,280				10	59,168.08	129,816,280
기타												
처분	처분합계	4	20,487.25	1,525,847				4	20,487.25	1,525,847		
	계	토지	2	19,024.00	1,247,920				2	19,024.00	1,247,920	
		건물	2	1,463.25	277,927				2	1,463.25	277,927	
		기타										
	4. 매각	토지	2	19,024.00	1,247,920				2	19,024.00	1,247,920	
		건물	2	1,463.25	277,927				2	1,463.25	277,927	
		기타										
	5. 양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	토지										
		건물										
기타												

## 2. 취득대상 재산 목록

### □ 당초취득

(단위 : m<sup>2</sup>, 천원)

재 산 의 표 시				추정금액 (천원)	취 득 시 기	취득 사유	취 득 소유자	비고
기관명	구분	소재지	수량(m <sup>2</sup> )					
충청북도 교육청	토지	제주시 도두일동 2540-1 외	7,352	2,640,000	2012. 상반기	가칭)충청북도제주교육 수련원 설립에 따른 부지 취득	교육감	

### □ 변경취득

(단위 : m<sup>2</sup>, 천원)

재 산 의 표 시				추정금액 (천원)	취 득 시 기	취득 사유	취 득 소유자	비고
기관명	구분	소재지	수량(m <sup>2</sup> )					
충청북도 교육청	토지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1622-1	7,934	2,640,000	2012. 하반기	가칭)충청북도제주교육 수련원 설립부지 변경 취득	교육감	도면1

### □ 변경사유

- 항공소음과 제주공항의 24시간 공항체제로의 변경예정 등에 따라 수련 시설로 부적합하여 모래해변과 연계한 해양수련활동 등이 가능한 위치로 변경하여 취득하고자 함

## 도면 1 : 가칭)충청북도제주교육수련원 설립부지 취득(변경) 위치도

건 명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수량 (㎡)	추정금액 (천원)	사 유
가칭)충청북도 제주교육수련원 설립부지 취득 (변경)	토지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1622-1	임	7,934	2,640,000	항공소음 등으로 인한 설립 예정위치 변경



# 관계법령 발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p>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 (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p> <p>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p> <p>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p> <p>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p> <p>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p> <p>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p>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교육감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